## 2. Challenges to Dental Surface Treatment 2.2 Lack of matrial properties and bonding strength (Porcelain → Zirconia)



HOME > OHIFPOR > ANARMASUNAT

## 라미네이트시술6개월만에탈락및파절

음 이용석기자 이 승인 2022/09:17 05:55 이 등 55월 0



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.

통상적으로 라미네이트의 유지기간은 5년 정도이며 일부 문헌보고에 의하면 초기 5년간 시술 실패율은 0~5%로 보고돼 시술 후 6개월 만에 탈락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.

A씨의 경우 라미네이트 전체가 탈락됐는데, 라미네이트의 탈락 원인 중 시술 상 원인으로 부적절한 라미네이트 접착으로 인해 탈락될 수 있다.

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A씨의 잘못으로 라미네이트가 탈락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 기 어렵다.

한편, 의사는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해 레진 및 라미네이트의 필요성이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가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의사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 으므로 의사는 A씨에 대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.

▲A씨가 라미네이트 후 6개월 정도 사용한 점 ▲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▲공평의 원칙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을 50%로 제한한다.

의사는 A씨에게 타 치과의원 시술비용 55만 원의 50%에 해당하는 27만5000원과 의료의 특수성, 전반적인 진료과정 등을 고려한 위자료 20만 원을 합한 47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.

## Porcelain → Zirconia (Cementation 강도 향상요구)



송곳니 라미네이트는 특히, 파결 가능성이 높은 부위!



측절치 라미네이트가 탈락되어 오신 경우